

수 원 당 수 2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 가 항 목 · 범 위 등 의 결 정 내 용)

2019. 8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며, 1차(‘18.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8.12.19)」에 이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19.05.07)」을 발표하였음
- 계획지구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지구이며,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에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계획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하며, 신분당선이 계획지구 인근에 예정됨에 따라 광역교통체계가 우수한 지역임

1.2 계획의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지정면적 : 684,444㎡(개발제한구역 포함)]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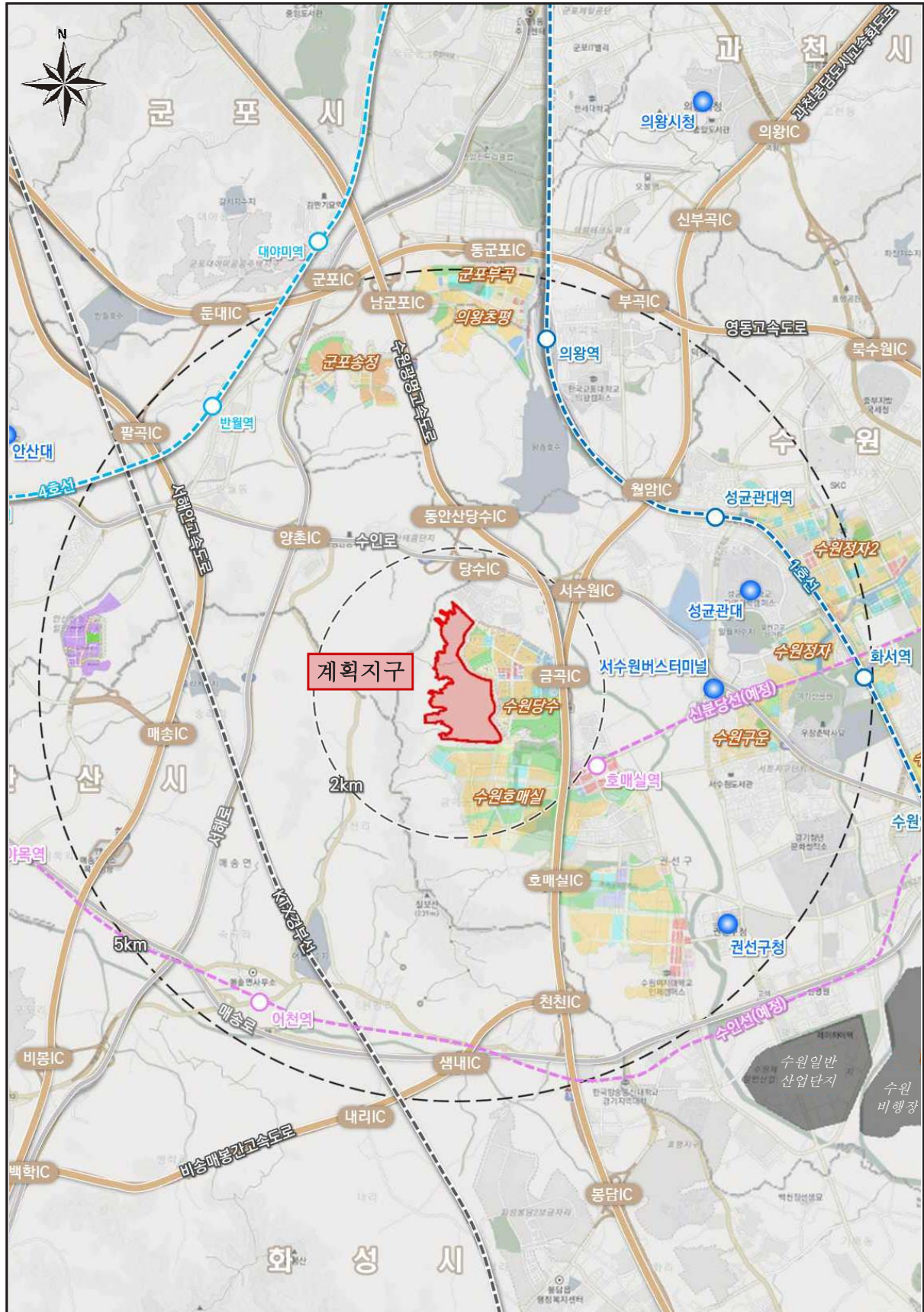
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3에 따라 지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제외됨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나.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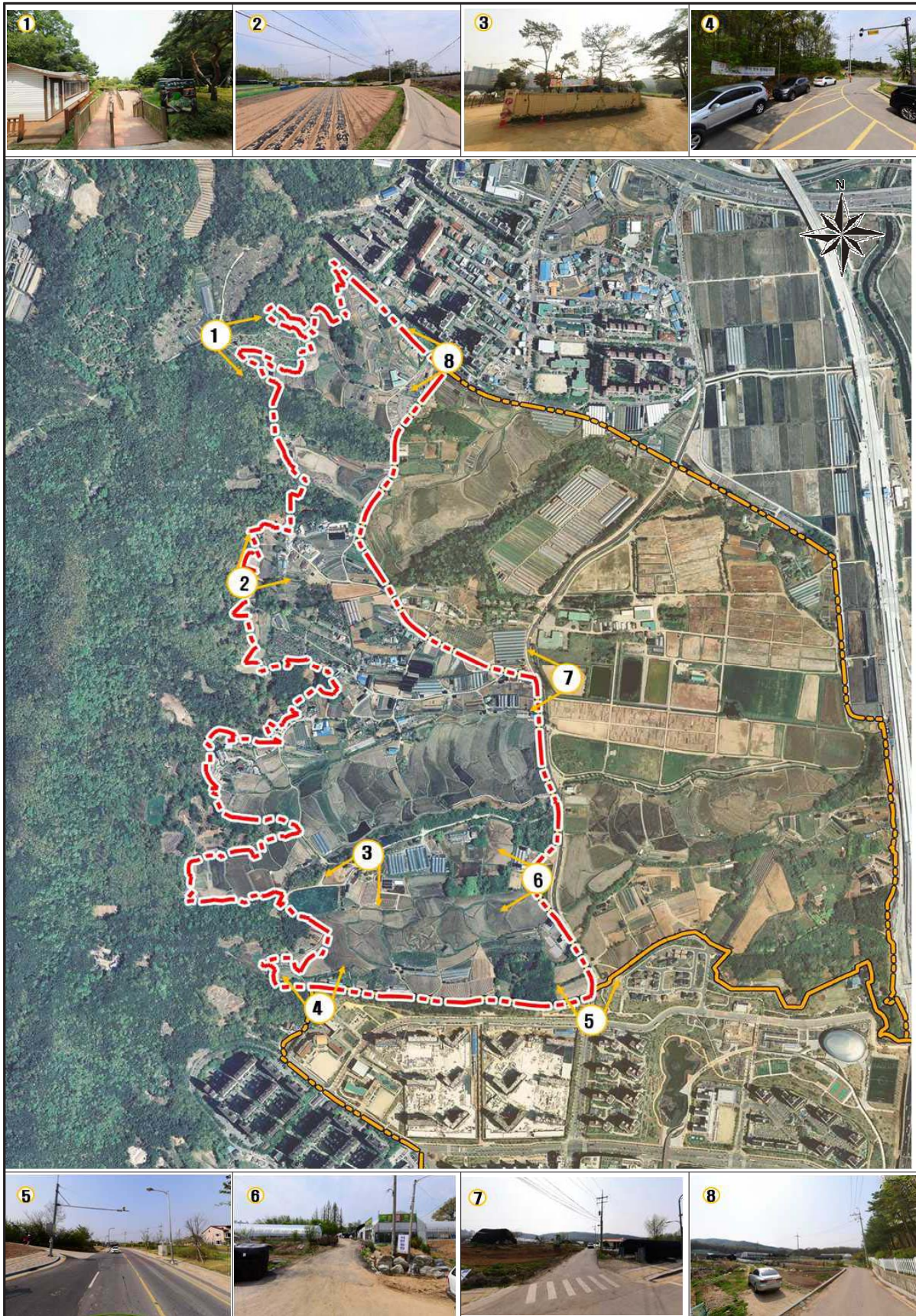
- 계 획 명 :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 면 적 : 684,444m²(개발제한구역 684,444m²)
- 수용가능인구 : 12,220인(5,000세대)
-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5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2019. 04. :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LH → 국토교통부)
- 2019.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19. 07.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9. 0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2019.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19.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예정)



(그림 1.2-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2-2) 계획지구 전경사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일자 : 2019. 7. 19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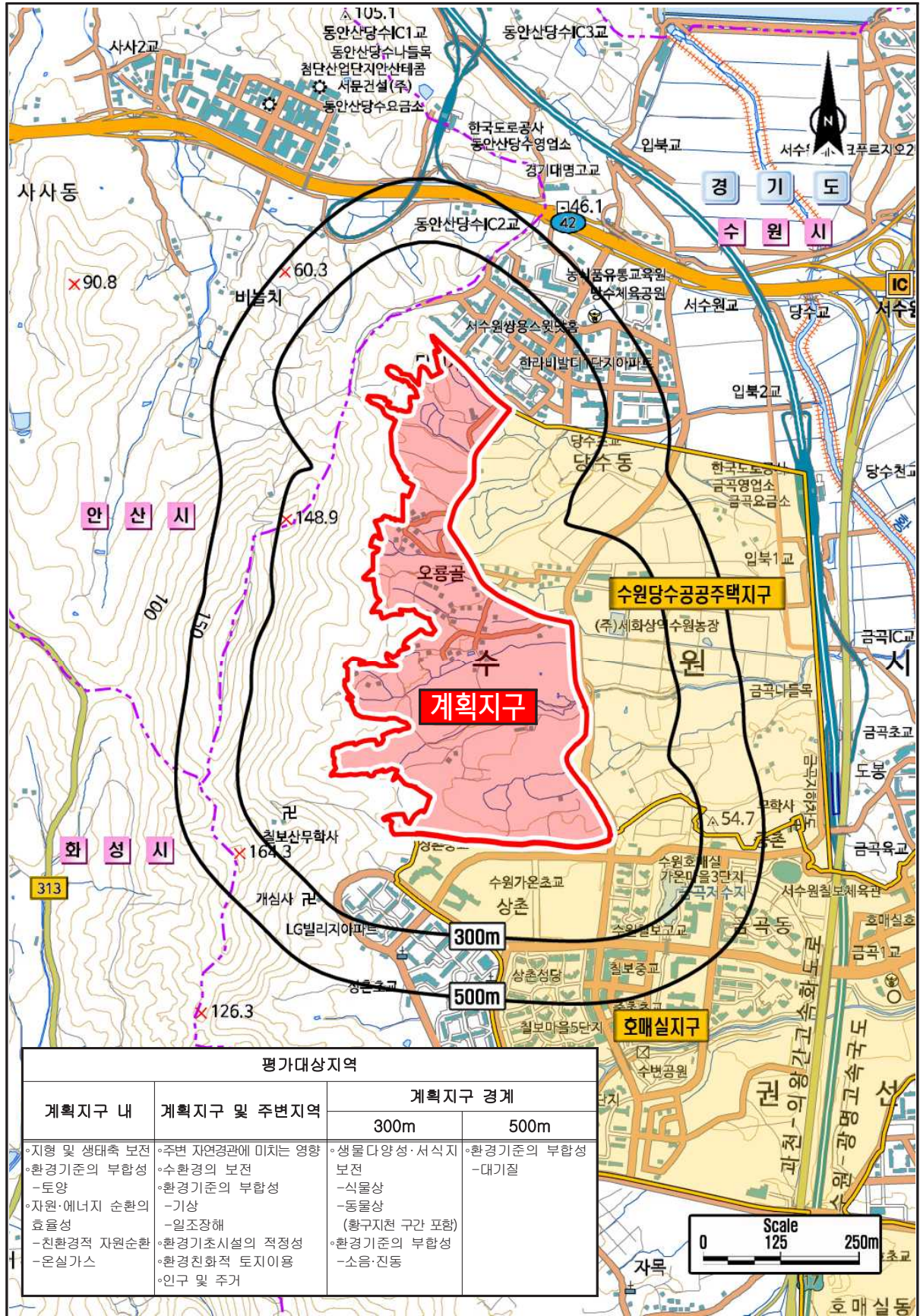
〈표 2.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 지 의 타 당 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300m 이내에 국도 42호선, 고속도로(수원-광명, 과천-봉담), 수원당수지구, 기존 주거지(호매실지구 등) 및 칠보산 능선축이 계획지구를 위요하여 위치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동물상 : 황구지천 구간 포함)	○ 공사시 ○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흩썰기 및 흩딛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지역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 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당수천, 황구지천)	○ 공사시 ○ 운영시

〈표 2.2.1-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 지 의 타 당 성	생 활 환 경 의 안 전 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대기질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소 음 · 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300m 이내에 수원당수지구,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과 기존 소음 발생시설인 국도 42호선, 고속도로(수원-광명, 과천-불당) 등이 위치함 ○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입지 검토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일 조 장 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 장애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지역 ○ 운영시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사회 · 경제 환경 과의 조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인구 및 주거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그림 2.2.1-1) 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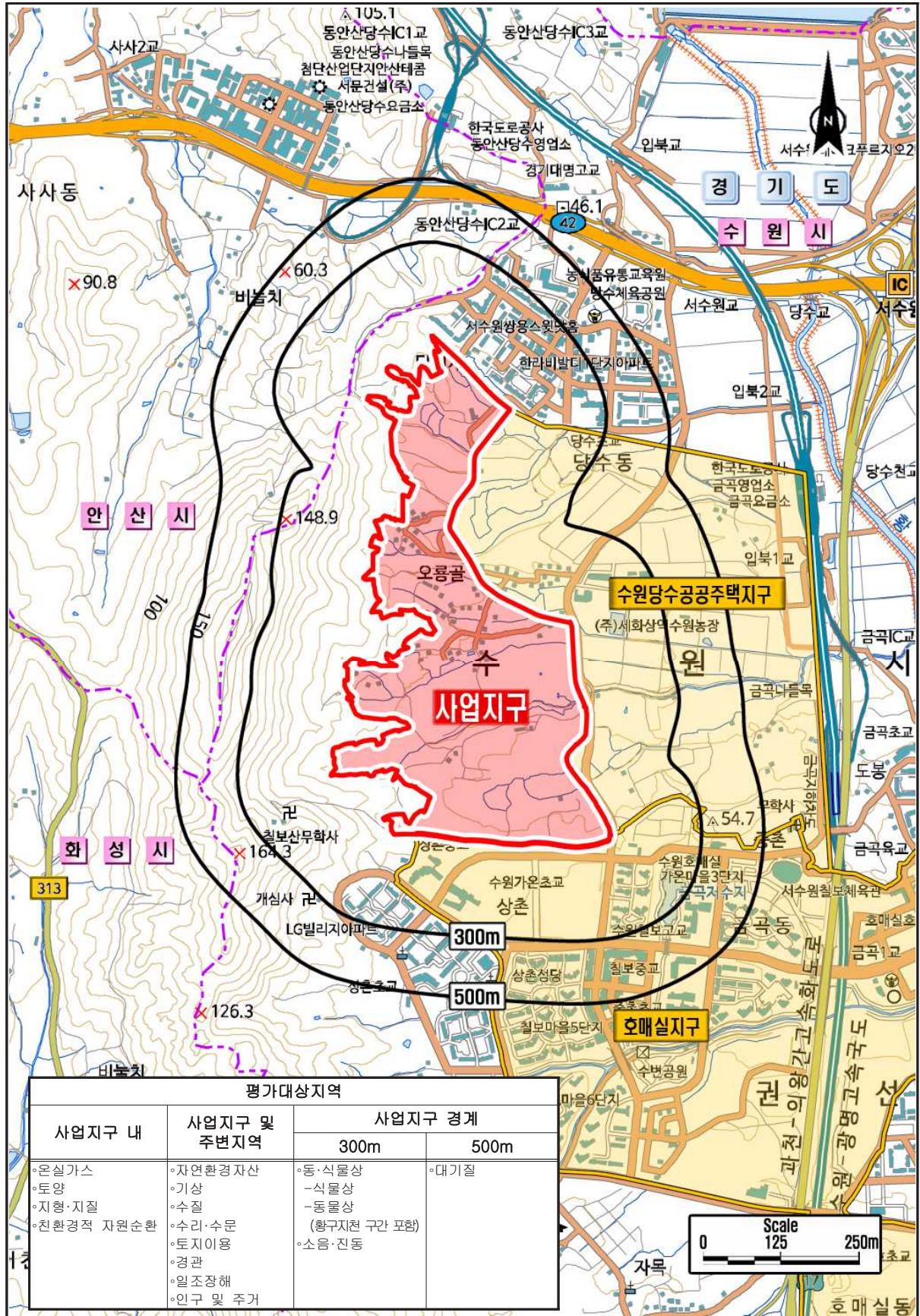
〈표 2.2.1-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 연 생 태 환 경	동·식물상	○ 사업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300m 이내에 국도 42호선, 고속도로(수원-광명, 과천-봉담), 수원당수지구, 기존 주거지(호매실지구 등) 및 칠보산 능선축이 사업지구를 둘러싸고 위치함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동물상 : 황구지천 구간 포함)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 기 환 경	기 상	○ 사업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예측에 기초자료로 이용 ○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통풍) 확보 등 국지적 기상 영향 예상 지역	○ 사업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대 기 질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수원당수지구 및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표 2.2.1-2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수 환 경	수 질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 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당수천, 황구지천)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 수립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유출량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당수천, 황구지천)	○공사시 ○운영시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 되는 지역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공사시
	지형·지질	○흙쌓기 및 흙꺼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사업지구	○공사시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사업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300m 이내에 수원 당수지구 및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과 기존 소음 발생시설인 국도42호선, 고속도로(수원-광명, 과천-봉담) 등이 위치함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영향 예상지역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영향 및 대책 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경 관	○주변 지역과의 경관영향 발생 지역 (토지이용변화 및 공동주택, 건축물 입지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일조장해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 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 · 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그림 2.2.1-2) 대상지역 설정도(환경영향평가)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2017.12」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4]에 제시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참조하였음
- 본 계획은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획을 수립할 경우 (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함

〈표 2.2.2-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지구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적용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입지조정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적용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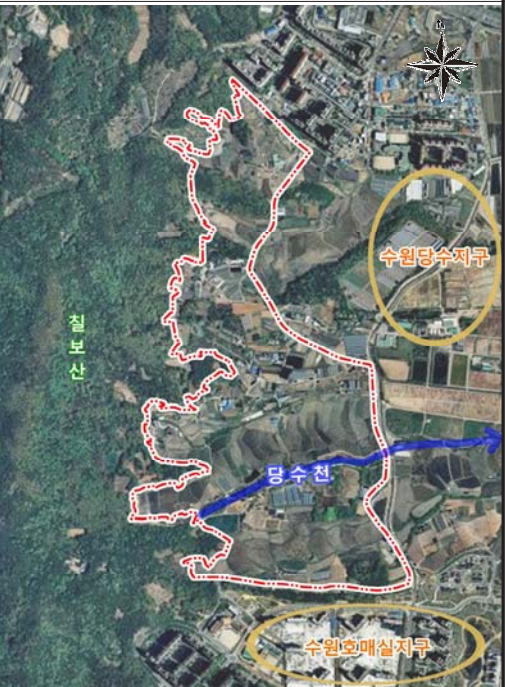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ition, No action)

-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및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2-2〉 계획비교(Acition, No action)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 신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한 주택공급의 안정적 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칠보산 여가녹지 및 동서·남북축의 연결 녹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계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전, 답)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당수지구 및 호매실지구 등 신규 개발지와 연결하여 뛰어난 교통접근성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장·단기적으로 개별적인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임
각종 보호지역 영향 여부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없음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 등은 없으며, 현장여건 및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 계획지구는 농경지(전, 답)가 대부분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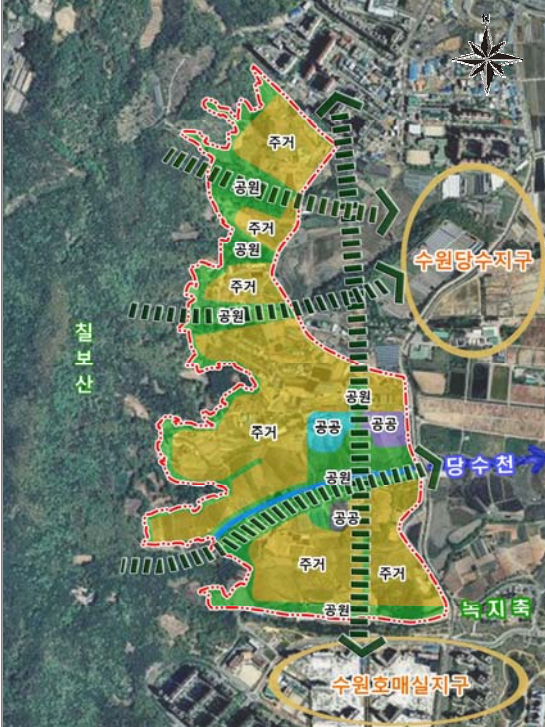
〈표 2.2.2-2 계속〉 계획비교(Acition, No action)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개발기본계획 미수립(No Action)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표고는 최저 41.3m, 최고 65.7m로 표고차 약 24.4m 정도이며 서고동저 지형을 이루며, 경사도는 계획 지구의 약 96.9%가 경사도 10°미만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계획지구는 대부분 전, 답으로 평탄지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지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 변화가 예상되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됨	계획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자연경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선정 (안)	○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대안 1을 선정함	

2)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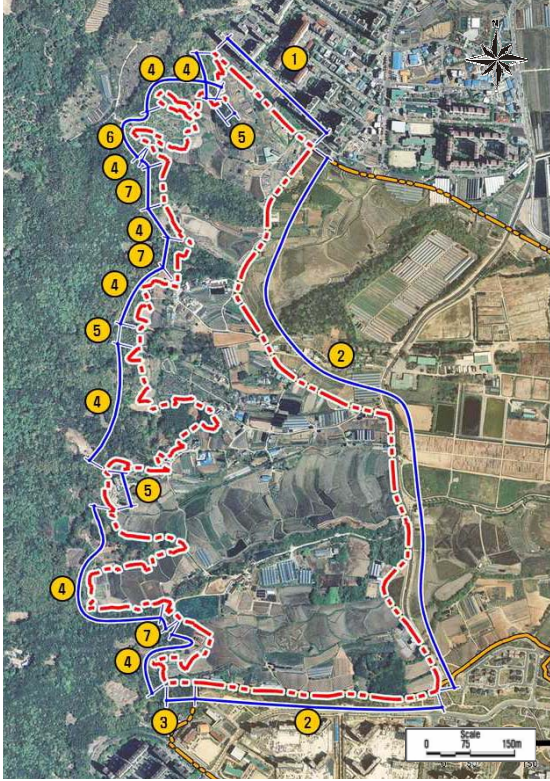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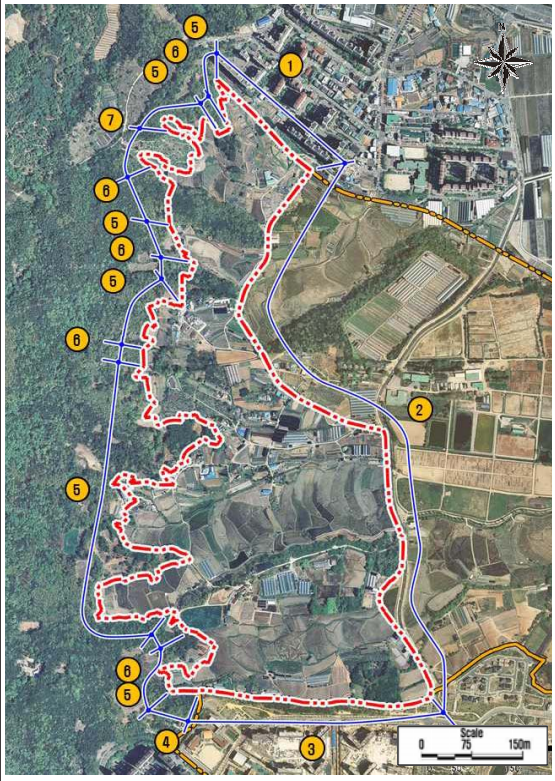
〈표 2.2.2-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 추진중인 당수지구 및 남측 호매실지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 - 계획지구 주변 사업지구와의 연계성 강화 및 공원 내 문화, 복지 등 생활SOC 시설 확충으로 삶의 가치가 교류하는 주거단지 조성 - 칠보산과의 연계 등 대상지를 중심으로 동서 및 남북축의 공원녹지체계 구축	- 추진중인 당수지구의 지구계획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칠보산 생태환경권을 고려한 동서축의 연계 녹지 확보 - 공원 내 교육 및 문화시설 도입 -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주택건설용지 최대 확보
토 지 이 용 구 상		
장 · 단점	- 추진중인 당수지구와의 연계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 계획지구 내 당수천 일원을 공원화하여 수변공원 및 교육, 문화 등 생활SOC 계획 - 당수지구와 칠보산 사이의 개발제한구역 잔여지를 포함한 개발로 하나의 통합된 계획적인 도시개발 가능 - 칠보산을 적극 활용한 공원·녹지의 동서축 및 남북축 계획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 동선 확보	- 공공주택은 1안에 비해 추가 공급이 가능하나,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용지 공급으로 1안 대비 높은 인구밀도 - 추진중인 당수지구와의 연계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 지구중심 가로변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로 편의성 도모 - 당수지구와의 통합적 연계개발 계획이 1안 대비 다소 미흡 - 공원·녹지의 남북축 연계 필요
선정 (안)	○	-
	추진중인 당수지구와 본 계획지구를 체계적·유기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칠보산과의 연계 등 공원녹지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 및 주변과의 교류·소통 기능 제공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대안 1을 선정	

3)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2-4〉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

구분	대안 1	대안 2
①	도시계획시설 경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경계(도로)
②	공공주택지구 경계(호매실, 당수)	공공주택지구 경계(당수)
③	현황도로 경계	공공주택지구 경계(호매실)
④	보전산지 경계	현황도로 경계
⑤	GB 2등급지 경계	보전산지 경계
⑥	칠보산 여가녹지 경계	구역계 정형화
⑦	구역계 정형화	칠보산 여가녹지 경계
지구계		

〈표 2.2.2-4 계속〉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

구분	대안 1	대안 2
규모	684,444m ²	681,000m ²
주거 용지	350,000m ² (51.1%)	372,000m ² (54.6%)
공원 녹지	245,000m ² (35.8%)	216,000m ² (31.7%)
장· 단점	•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인접 및 신분당선이 계획지구 인근 예정으로 광역교통체계가 우수함 • 전반적으로 서고동저 지형의 평탄한 지형 및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주변 개발 사업지구와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토지이용 계획 수립 가능 • 지구계 설정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2등급지 이상 지역은 제척하였으며 부득이 편입된 부분은 공원·녹지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및 국토환경성평가 지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구역계 정형화 실시로 잔여 농지 및 지장물 발생 최소화 가능 • 대상지 서측 칠보산 생태여가녹지를 적극 활용하여 동서·남북축의 연결 녹지 계획 • 계획지구 동측 수원당수지구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내 교육, 문화 등 생활SOC 적정 공급을 통한 생활만족도 제고 가능	•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인접 및 신분당선이 대상지 인근 예정으로 광역교통체계가 우수함 • 전반적으로 서고동저 지형의 평탄한 지형 및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주변 개발 사업지구와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토지이용 계획 수립 가능 • 지구계 설정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2등급지 이상 지역은 제척하였으며 부득이 편입된 부분은 공원·녹지로 계획 •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을 우선 고려한 지구계설정으로 잔여 농지 발생 • 대안 1에 비해 비교적 지구계 정형화가 미흡하여 잔여 농지 발생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어려움
선정 (안)	○	-
	• 계획지구는 교통여건 및 접근이 양호하고 평탄한 지형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하며, 계획지구 내 하천과 연계한 공원·녹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원·녹지 확대 및 저밀도의 주거용지 공급,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 생활SOC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배치 등을 고려하기 위해 비교적 지구계가 정형화된 대안 1을 선정함	

2.2.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8-205호」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3-1〉 평가항목 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 고
계획 의 적 정 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의 비교 측면에서 대안 비교·검토	-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영향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의 지형변화 및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생태축 변화 등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변화 예상 등	-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토사유출, 오수 및 비 점오염물질의 주변 수계 영향 등 • 수질오염총량 대상지역(진위A 단위구역)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
			대기질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에 의한 에너지사용,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대기질 영향 등	-
			토양	• 계획시행으로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등	-
			소음 · 진동	• 계획지구 주변환경을 고려한 소음·진동 현황 파악 • 계획시행에 의한 건설장비 가동,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영향, 군항공기소음 영향 등	-
			일조장해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예상	-

〈표 2.2.3-1 계속〉 평가항목 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 고
입 지 의 타 당 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으로 분뇨 및 임목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발생에 따른 영향	-
			온실가스	• 계획시행으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토지이용변화 및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 가스 발생 예상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
		인구 및 주거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

2) 평가범위 및 방법

- 계획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의 특성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시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3-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 획 의 적 정 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의 비교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 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300m 이내 - 동물상 : 황구지천 구간 포함 • 현황조사(3회) - 육상·육수생태계	•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 고 생태계 영향을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	• 계획내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를 가시권 검토 등을 통해 평가

〈표 2.2.3-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당수천, 황구지천 • 현황조사(2회) - 하천수 : 6지점 - 지하수 : 2지점	• 시설계획에 따른 토사유출량 및 발생오수 영향예측 • 시설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산정, 평가 • 수질오염총량 협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주변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대기질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7지점	•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발생 및 영향을 예측하여 대기 환경기준과 비교 평가
			토양	• 계획지구 • 현황조사(2회) : 5지점	• 계획시행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소음·진동	• 계획지구 및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5지점	• 계획내용을 토대로 공사시 소음·진동, 운영시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환경기준 등과 비교 평가 • 군항공기소음 영향범위 검토
			일조장해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계획지역 내 일조영향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환경기초 시설 연계 처리 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구	•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폐기물 처리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과 에너지 순환성 검토
			온실가스	• 계획지구	• 계획시행시 연료사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현황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주변 현황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여부 검토
		인구 및 주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인구 유입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동·식물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자연환경자산, 기상, 인구, 주거 등 기초 자료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4개 항목은 일반평가(현황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본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해양환경,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산업 등 6개 항목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2.2.3-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평가항목(환경영향평가)

구 분	항목수	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2개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분야	4개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분야	3개	○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3개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분야	7개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전파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3개	○ 인구, 주거, 산업
계	22개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표 2.2.3-4〉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중점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합 계	12항목	4항목	6항목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온실가스	○ 기상	○ 악취
수환경분야	○ 수질, 수리·수문	-	○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	○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사회·경제환경분야	-	○ 인구, 주거	○ 산업

〈표 2.2.3-5〉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환경영향평가)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12	4	6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공사 및 운영시 동·식물상(보호대상 동·식물 등) 영향 예측 및 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기존문헌 등을 통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차량 및 시설 등 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악취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	•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수환경	수질	○	-	-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적정처리 대책 • 수질오염총량 협의
	수리·수문	○	-	-	• 토지이용 변화 등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해양환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위치·규모 등에 관한 대안 검토·선정
	토양	○	-	-	•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및 운영시 토양오염 요인 파악
	지형·지질	○	-	-	• 지형·지질 현황조사 및 흙깎기·흙쌓기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및 적법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 장비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주변 고속도로 및 국도, 내부도로 이용 차량, 군항공기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위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경관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위생· 공중보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 미미
	전파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분석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주거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거현황 파악
	산업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3-6〉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자연생태 환 경	동·식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동물상 : 황구지천 구간 포함 - 현황조사(2회) - 육상·육수생태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법정보호종 포함)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 곤충류, 양서·파충류,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및 영향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도권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
	대 기 질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7지점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대기질 현황 조사 - 공사시 토사이동 및 공사차량에 의한 대기영향 예측(모델링 활용) 및 저감 대책 수립 - 운영시 지구 내 연료사용, 도로 차량 운행 등에 따른 대기영향을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사업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산림 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현황 예측	- 공사시 - 운영시
수 환 경	수질 (수리·수문)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당수천, 황구지천) - 현황조사(2회) - 하천수 : 6지점 - 지하수 : 2지점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수질현황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	- 공사시 - 운영시

〈표 2.2.3-6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토지환경	토지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토양	• 사업지구 • 현황조사(2회) - 5지점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 공사시
	지형·지질	• 사업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 토공계획 검토	•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지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현황조사(2회) - 5지점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소음·진동현황 조사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주변 소음원(도로, 군항공기) 및 사업지구 내부도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검토	-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거시설의 일조권 확보 검토	•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인구 유입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 운영시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환경질 조사항목 : 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의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제8조 관련)에 제시된 환경현황 조사방법을 충실히 준수하겠음
 -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탐문조사 시 가급적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시기에 가급적 현지조사 실시
 - 계획지구 및 인접 수계를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
 - 각 분류군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
- 이후 환경영향평가지 현장조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계획임

〈표 2.2.4-1〉 환경질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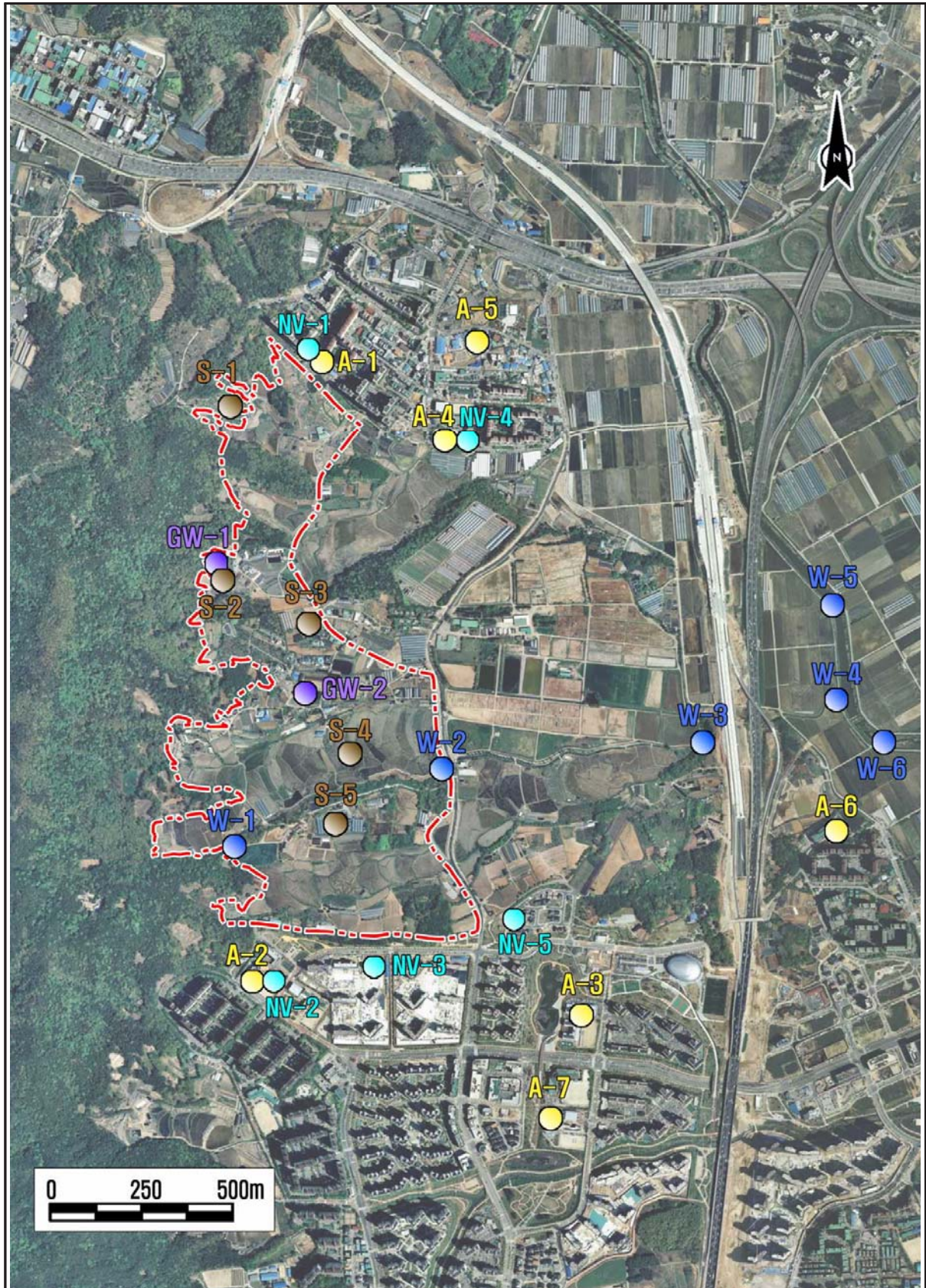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 지점	항목수	조사횟수		비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 기 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7지점	8개	2회	2회	-
지표수질	pH, BOD, COD, SS, DO, T-P,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b, Cr ⁶⁺ , PCB, ABS,	6지점	16개	2회	2회	-
지하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 ⁶⁺ , NH ₃ -N, NO ₂ -N, Cd, Al, 페놀, KMnO ₄ 소비량, 총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2지점	25개	2회	2회	-
토 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Cr ⁶⁺ ,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5지점	21개	2회	2회	-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5지점	2개	2회	2회	-

주) 1. 환경질측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2. 동·식물상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3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표 2.2.4-2〉 조사지점

항목	조사지점	조사위치	비고
대 기 질	A -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31번길 51-37(드림유치원)	교육시설
	A -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73번길 60(상촌중학교)	교육시설
	A -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27(칠보고등학교)	교육시설
	A - 4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6(당수초등학교)	교육시설
	A - 5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32번길 28-4(당수파출소)	공공시설
	A - 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17번길 30(금곡초등학교)	교육시설
	A - 7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30(중촌초등학교)	교육시설
지표수질	W -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산 68	당수천 상류
	W -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590-2 인근	당수천 중류
	W -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63-45 인근	당수천 하류
	W - 4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148 인근	황구지천 합류점(당수천)
	W - 5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85 인근	황구지천 상류
	W - 6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 인근	황구지천 하류
지하수질	GW -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501-1 인근	-
	GW -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79-4 인근	-
토양	S -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08-1 인근	공원
	S -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500 인근	밭
	S -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79 인근	밭
	S - 4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583-6 인근	밭
	S - 5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00 인근	밭(비닐하우스)
소음 · 진동	NV -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31번길 51-37(드림유치원)	일반지역
	NV -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73번길 60(상촌중학교)	일반지역
	NV -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305	일반지역
	NV - 4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6(당수초등학교)	일반지역
	NV - 5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48번길 58-35	일반지역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2.4-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기시 환경질 현황조사 지점도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2.2.5-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환경영향평가

-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2.2.5-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6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 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 기간 내에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할 지자체와 설명회 개최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